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관련 정보 공개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5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4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3. 28.

(3) 회 부 일 : 2025. 3.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쉽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쉽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 쉽터와 피해장애아동 쉽터의 명칭, 주소 등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쉽터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쉽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쉽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쉽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명칭, 주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생략) 제9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6. (생략) <u><신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u>제5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쉽터 및 피해장애아</u>

4. ~ 7. (생략) ④ (생략)	<u>동 쉽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u> <u>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u> 4.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장애인 쉽터와 피해장애아동 쉽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성인장애인과 장애아동을 현장에서 분리·보호하고, 이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 4개소(피해장애아동 쉽터 2개소 포함) 등 전국에 총 29개소(피해장애아동 쉽터 10개소 포함)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장애인 쉽터 및 피해장애아동 쉽터 현황 >

(‘24년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29 (아동 10)	4 (아동 2)	3 (아동 2)	1	3 (아동 2)	1	1	3 (아동 2)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4 (아동 2)	1	1	1	1	1	1	1	1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장애인 쉽터와 피해장애아동 쉽터의 명칭, 정보 등의 제공 및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 입소자가 도로명주소 명판을 촬영해 가해자에게 전송한 사례, ▲ 건물 외벽 점자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쉼터 내부 구조가 노출된 사례, ▲ 위치연동 앱이나 카카오톡 위치 공유를 통해 쉼터 위치가 노출된 사례, ▲사업자 정보 검색 사이트나 채용 공고 등을 통해 쉼터 주소가 공개된 사례, ▲ 가해자가 쉼터를 직접 찾아와 위협을 가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
- 이에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서는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시, 명칭·위치·연락처 등의 정보 비공개와 입소자 신원 및 현황에 대한 발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적용 가능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법령 체계만으로는 피해 장애인의 충분한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2025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5-3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8 운영

사. 유의사항

- 피해장애인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외부인 특히 학대행위자 및 행위자와 관련된 사람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피해장애인과 단독으로 만나지 않도록 함

- 방문목적과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장애인의 접촉을 함부로 허가하여서는 안 됨
- 피해장애인의 신원, 입소 여부, 입소 현황 등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 피해장애인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인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 등 지원, 협조(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은 가정폭력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정 내에서 친권자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한 피해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 적용 가능)

5-3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8 운영

사. 유의사항

- 피해장애아동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피해장애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외부인 특히 학대행위자 및 행위자와 관련된 사람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피해장애아동과 단독으로 만나지 않도록 함
- 방문목적과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장애아동과의 접촉을 함부로 허가하여서는 안 됨
- 피해장애아동의 신원, 입소 여부, 입소 현황 등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 보호조치 된 피해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아동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 등 지원, 협조(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은 가정폭력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정 내에서 친권자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한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 적용 가능)

□ 다만, 개정안은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정보 공개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예외 없이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구호, 수사 협조, 의료·복지 연계 등 공익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까지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공무원, 상담기관, 수사기관 등이 피해장애인 및 아동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고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112신고자의 성명, 주소, 음성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목적 외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사 목적, 신고자의 동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 규정 등 예외 사유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공익적 필요에 따른 정보 활용이 원칙적 금지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입법상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주소·성별·나이·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둘째, 개정안은 ‘알아볼 수 있는 명칭, 주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및 공개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 쉽터 및 피해장애아동 쉽터의 명칭은 대부분 ‘지역명 + 피해장애인 쉽터’로 사용되고 있어, 명칭 자체까지 공개·제공을 금지할 필요성은 낮아 보임.
- 따라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준으로 ① 정보 공개·제공 금지의 주체 및 사유 등에 관한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② 쉽터 명칭 자체에 대한 공개·제공 금지는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쉽터의 주소, 명칭 등은 다양한 법에 근거한 전산화된 행정처리로 인해 쉽터 운영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장애인 특성에 따라 피해장애인 스스로 위치 정보 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에 따른 법적 제재가 ‘쉽터’와 ‘피해장애인’에게 부과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또한 명칭 정보만으로는 쉽터 위치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명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행정처리 및 전산화된 시스템 등으로 시설의 주소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므로, 과태료는 고의로 공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나. 장애인 쉽터 및 피해장애아동 쉽터 관련 기관

- 부산광역시 피해아동쉽터: 고의로 공개·제공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수정의견 제시
- 대구광역시 한국피해장애인·장애아동쉽터협회: 주소를 도로명 주소 명판, 노유자 시설 점자 안내판 포함 등으로 구체화하고, ‘통신매개체를 통한 위치추적 등’을 공개·제공 금지 사항에 포함하는 수정의견 제시
-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피해장애인·장애아동쉽터협회:
 - ① 사업자 정보 제공 등 쉽터의 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노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로 보일 수 있고,
 - ② 소방·수리 등 외부인 출입 시 명칭·주소 제공이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운영 부담이 있으며,
 - ③ ‘피해장애인 쉽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 ④ 발달장애인의 통신기기 사용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이 오히려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피해장애인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신변안전과 회복에 큰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쉼터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은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찬성함.

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피해장애인의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되나, 쉼터 접근 방법 파악의 어려움과 실무적 혼선 우려도 있어, 안내 체계 및 연계기관과의 협조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